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비판과 변형 *

-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 권 정 임 ■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티트(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사회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화주의 기획을 '공유부'/'공유경제'와 직접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간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6462).

■ 권정임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권 정 임

체계적인 연관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변형할 것을 제안한다.

주 제 : 사회·정치철학, 기본소득론

검색어 : 신공화주의,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 직접민주주의, 공
유경제, 페딧, 라벤토스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티트(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¹⁾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²⁾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기본소득론 및 이와 연관된 사회·정치철학적 사유의 발전을 위해 신공화주의 및 신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 신공화주의의 이론가들, 특히 페티트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에 함축되어 있는 방법론적 전제인 ‘전체론’(holism)을 명시적으로 전개하면서, ‘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같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의 전통적인 쟁점들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게 되듯 이는 기본소득론의 발전적인 전개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페티트를 비롯한 신공화주의의 이론가들이 공화주의가 전통적으로 제기해 온 ‘공동선’의 외연을 사실상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연계하여 적절한 경제영역에서 “공유”의

-
- 1) 이 글에서의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 2) 페티트는 자신의 공화주의 사상을 “신공화주의”라고 부른다(Lovett, F./Pettit, P. 2009: 11 이하 참조). 그는 이를 때로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라고도 부른다. ‘시민’의 부가를 통해 그는 자신이 대변하는 공화주의를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사상, 곧 입헌군주주의와 미국 공화당의 공화주의 및 공화주의적 사유의 공동체주의적 형태로부터 차별화하고자 한다(Martí/Pettit, 2010: 31).

도입까지 지지하기 때문이다(곽준혁, 2010: 58). 아쉬운 점은 ‘경제’나 ‘공유’에 대한 이들의 논의가 사실상 ‘시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 특히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의 부재는 페티를 비롯한 신공화주의 및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 불충분하게 전개된 지점이다. 아울러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공화주의 이론가들의 불충분성과 연계되기도 한다. 신공화주의의 한계를 넘어 기본소득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이 글에서의 비판적 연구는 따라서 ‘공유경제’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페티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신공화주의 정치사상을 그 논리적 구조와 핵심이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3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연구에 기초하여 페티, 라벤토스(Raventós) 등이 2000년대 이후 전개하는 기본소득론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전망을 모색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주장을 요약 정리한다.

2. 페티의 신공화주의 정치사상 및 그 논리적 구조

1) 1997년에 출간된 『공화주의』(*Republicanism*)에서 페티는 자신의 정치사상과 “국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Pettit, 1997: 4)을, “공리”처럼 기능하는 특정한 핵심이념(같은 책: 11) 또는 “규범적 관념”(같은 책: 1)에서 도출하는 형태로 전개한다. 정책이란 정당성을 보여주는 한에서만 지지를 획득하며(같은 글), 정치란 이런저런 사상의 조류 속에서 규범적 언어로 구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같은 책: 2).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광범한 동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자신의 핵심이념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페티트는, 특정이념 자체의 매력과 이 이념에서 도출되는 이론들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제시한다(같은 책: 11). 그렇지만 이 정도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적 관념은 많다. 페티트가 특정 규범을 자신의 핵심이념으로 채택하는 근거는 사실 보다 근본적인 차원, 곧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의 “사회적 존재론”(Pettit, 1995: 117)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1995년의 『공동지성』(*Common Mind*)에서 전개되는 페티트의 사회적 존재론에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전체론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영향 아래 그는 전체론을, 개인이 지닌 인간에 고유한 특성의 출현을 위해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의존”(같은 책: 166), “사회적 관계”(같은 책: 169), 결국 “사회”(같은 글)가 요청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정의한다. 이때 그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특히 사유에 주목하며, ‘삼각형’ 같은 개념에 부합하는 사례의 ‘무한성’ 등에 비한 ‘유한성’과 ‘오류가능성’ 같은 개인적 지성(mind)에 고유한 한계가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극복됨을 부각한다(같은 책: 8 이하). 그의 이러한 전체론을 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그가 인간을 그가 속한 사회 및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존재”(social agents) (같은 책: 213)로 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이는 특정 개인이나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방법론적 개인주의와는 달리,³⁾ 관련되는 타인과 사회현상 및 사회관계 전체와의 연관 아래 연구하는 방법론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⁴⁾

3) 그는 자신의 전체론을 방법론적 개인주의 같은 “원자론”과 반대되는 것으로 본다(같은 책: 118).

4) 일반적으로 ‘전체론’은 “대상을 그 구성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 및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구”(권정임, 2009: 41)하는 사유형태나 연구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성공적이라

이처럼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면서도 그는 개인의 특성과 운명을 그가 속한 ‘사회’ 또는 ‘전체’가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집단주의”(collectivism) (같은 책:118)로 비판하면서 그는 개인이 자율성, 특히 지향성(intentionality)과 관련된 특정한 자율성과 능동성을 향유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개인주의”로 정의한다(같은 책: 120). 결국 그는 인간을 고유한 자율적·능동적인 역량을 통해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사회를 형성해 가는 존재로 본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관점을 “전체론적 개인주의”(holistic individualism) (같은 책: 118, 165)로 제시한다.⁵⁾

그런데 이처럼 전체론, 또는 페티이 제안하듯 개인의 자율적 역량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전체론적 개인주의라는 관점에서 인간 또는 인간의 좋은 삶을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귀결된다.

첫째,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율적·능동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존엄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곧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권과 각자가 원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⁶⁾

둘째, 인간 삶의 자연적 기초까지 포괄할 때, 사회는 개인들과

는 것은 연구대상 자체가 전체론적 연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은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론은 존재론적인 함축을 갖는다. 페티은 이 전체론을 ‘사회’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전체론에 기초하는 사상가의 대표적 사례로는 공화주의자들 외에 맑스를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맑스 역시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한다(권정임, 2008 참조). 앞으로 ‘전체론’은 주로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되는 연구방법론 또는 사회적 존재론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 개인주의와 사실상 동일시된다.
- 6) 판 빠레이스가 강조하듯(Van Parijs, 1995: 20) ‘원하는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니라 ‘원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자유’로 표현하였다.

그들 간의 사회관계와 자연 및 개인과 자연 간의 사회적 자연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좋은 사회관계나 제도처럼 ‘개인적 차원의 좋음’의 조건 또는 그 계기가 되어 이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차원의 좋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좋음을 창출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전체론적인 필연성과 합리성(이하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에 대한 간섭이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에 따라, 또한 인권을 존중하면서 행해질 때,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시민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로서의 “인민”(김경희, 2009: 20)에게 좋은 것으로서의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부각이 시사하듯, 공화주의자들에게 ‘인민’에게 좋은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좋은 사회관계와 제도라는 의미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좋은 것을 포괄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론은 공화주의 정치사상에 함축되어 있는 전체의 하나다.7) 자신의 정치사상의 기초로 페팅이 전체론적 개인주의를 명시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은, 그가 공화주의적 사유 전통을 계승하는 이유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유 전통을 보다 엄밀하게 발전시킴을 의미한다.8) 이를 입증하듯, 위에서 논한 전체론의 귀결들은 사

7) 샌들(Sandel)의 공화주의로의 입장전환으로 예시할 수 있듯이 오늘날 공화주의 사유전통이 부활하는 이유의 하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는 자유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모색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페팅은 ‘자유’와 ‘정부’에 대한 공화주의철학으로서의 자신의 시민공화주의가,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임을 명시한다(Martí/Pettit, 2010: 31).

8) 페팅은 자신이 공화주의에 대한 로마적 전통(Martí/Pettit, 2010: 40이하), 특히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공화파”(commonwealthmen) (Pettit, 1997: 5이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 페티트 사상의 기초로 작동한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자율적·능동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원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자유’에 대한 요청은 페티트의 ‘개인주의’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앞으로 보게 되듯, 그는 이를 위해 지배받지 않을 권리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권리 등을 요청한다. 이는 그의 공화주의가 사실상 ‘인권’에 대한 요청 또한 내포함을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차원의 필연성과 합리성 역시 “자연적 역사적 필연성들”(Martí/Pettit, 2010: 58)이라는 형태로 인정하며,⁹⁾ “공동이익”을 비롯한 공동선의 추구를 국가의 의무로 요청한다(Pettit, 1997: 290). 나아가 사회적 합리성에 따른 개인에 대한 간섭을 ‘비지배 간섭’ 또는 ‘비자의적 간섭’¹⁰⁾으로 보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전체론의 귀결들을 압축적으로 내포하여 페티트의 신공화주의 사상이 도출되는 핵심이념은 ‘비지배자유’다.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자.

2) 먼저 페티트의 ‘비지배자유’ 개념부터 살펴보자.

‘비지배자유’란 ‘자유’를 지배가 없는 상태, 곧 비지배(non-domination) 상태로 봄을 의미한다(같은 책: vii). 비지배 상태란 외부로부터의 자의적 간섭(arbitrary interference)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같은 책: vii이하). 따라서 비지배자유를 정확하게

9) 이 “자연적·역사적 필연성들”로 페티트는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 태어났다는 점, 우리의 세계는 사회 외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세계라는 점, 모든 사회에는 중앙집중적으로(centrally) 또한 강제적으로(coercively) 조직해야 하는 사안(business)이 있다는 점을 든다(Martí/Pettit, 2010: 58이하). 이는 그가 “자연적·역사적 필연성들”을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서술한 것으로 해석된다.

10) 페티트는 비자의적 간섭을 “공유되지 않은 이익이나 관념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간섭이 아닌 것”(Pettit, 1997: 107)으로 정의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간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페릿에게서 자의적 간섭이란 공동선 또는 “인민 공동의 이익과 이념을 존중”하는 “법”(같은 책: 36)을 위반하는 간섭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비지배자유를 “오직 적절한 법체제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시민권”(같은 책: 36)으로 본다. 이에 따를 때, 적절한 법체제에 기초하는 비자의적 간섭은 자유를 침해는 지배가 아니다.

나아가 페릿은 이 비지배자유 개념이 콩스땅(Constant)과 벌린(Berlin)이 정식화한 이후 서구의 자유개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두 자유 개념, 곧 간섭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 자율 또는 자기지배와 자기실현 및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비롯한 자기실현의 실행기제라는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적극적 자유’(같은 책: 18)와 근본적으로 다른 독자적인 자유개념임을 강조한다. 관대한 주인이 노예를 간섭하지 않는 경우나 국가가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각각 예시하듯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은 다르며,¹¹⁾ 비지배자유가 주장하는 지배의 부재는 적극적 자유가 주장하는 자율이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도 다르다는 것이다(같은 책: 22).¹²⁾

나아가 그는 ‘비지배자유’를 ‘소극적 자유’보다 우수하게 본다. ‘비지배자유’의 관점을 따를 때, ‘자유’는 강자로부터의 법적인 안전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므로 약자가 자유롭기 위해 강자의 관대함이라는 “우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같은 책: 24). 또한 지배를 제거하고 공동선을 극대화하여 모두의 개인적 좋음 또한 극대화하는 국가의 합법적 간섭이 승인되

11) 간섭 없는 지배의 경우는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자유롭지만 비지배자유 관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12) ‘자유’에 대한 콩스땅과 벌린의 견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광노완, 2015: 129이하 참조.

고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비지배자유’를 ‘적극적 자유’보다도 우수하게 본다. 직접적인 정치참여로서의 ‘적극적 자유’는 다수의 전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8). 다른 한편 개인적 자율성으로서의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는 매력적이고 ‘비지배자유’보다 풍부한 이상이지만, ‘비지배자유’의 확보가 그 선결조건이라는 점에서 무시한다(같은 책: 81). 동시에 그는 공화주의가 전통적으로 사실상 ‘비지배자유’에 최상의 전통적 가치를 부여해 왔음을 입증하여(같은 책: 27 이하), ‘비지배자유’가 나머지 두 자유개념보다 사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더 심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음을 보인다.

이러한 페팅의 자유관과 법치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페팅이 법치의 전제로 “적절한 법체제”(같은 책: 36)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법체제의 적절성의 기준으로 “인민의 공통된 이익과 이념”(같은 글)에 대한 존중, 곧 인민의 공동선에 대한 존중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법체제’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그가 법체제를 사실상 공동선 또는 사회적 차원의 좋음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구현하는 체제로 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의적 또는 비합법적인 간섭이 없는 상태로서의 ‘비지배자유’는, 사회적 좋음이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필연성/합리성과 개인의 자유를 통합하여 그의 전체론적 개인주의의 귀결들을 압축적으로 내포한다. 이를 통해 그는 한편에서는, “자유를” “시민권과 등가적인” “본래적으로 사회적인 것”이자 “자유를 향유하는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와 지위를 줄 수 있는” “주관적인 가치”(같은 책: vii)로 정립하고자 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한다. 다른 한편, 이를 통해 ‘비지배자유’는 그의 신공화주의 정치사상이 전체론적 개인주의의 관점에 일관되게 전개되는 것을 주도하는 핵심범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그의 정치사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출발범주, 곧 ‘비지배자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 사상의 발전으로서의 그의 신공화주의가 비지배자유개념의 발전 역시 동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가 달성한 비지배자유개념의 발전이 그가 이룩한 사상발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페тит은 ‘비지배자유’를 직접적으로는 두 측면에서 발전시킨다.

첫 번째는 ‘비지배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의 확장, 곧 보편화다. 근대 이전의 공화주의자들에게 비지배자유는 향유주체는 사실상 “소수의 남성 엘리트”, 곧 “재산을 소유한” “주류 남성들”로서의 “시민”(같은 책: 48)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페тит은 비지배자유는 향유주체를 명시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으로 보편화한다.

두 번째는 ‘비지배자유’의 개념적 심화다. 그는 ‘비지배자유’의 “강도”와 “범위”를 구분하여 전자를 “자유를 박탈당하여”(unfree) 사실상 지배를 받는 상태와 관련짓는다. 후자는 자유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 제한까지 포괄하는 물질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non-free) 상태와 관련짓는다(같은 책: 273).¹³⁾ 또한 자유박탈요소의 감소를 ‘비지배자유’의 강도증가로, 자유향유영역의 증대를 ‘비지배자유’의 범위확장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의 범위확장에 비해 ‘비지배자유’의 강도증가에 정책적인 우선성을 부여한다(같은 책: 106). ‘비지배자유’의 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배되지 않는 선택”을 보다 많이 제공하는, ‘비지배자유’의 보다 넓은 범위가 선호된다(같은 글).¹⁴⁾

13) 페тит에 따르면 “비지배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물질적 자원들”에 의존한다(Pettit, 1997: 113).

14) 페тит에게는 지배가 일차적인 해악이다. 이에 비해 간섭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와 용이함을 제한하는 모든 것은 이차적인 해악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신의 비지배자유개념을 “수직적으로 복잡한 개념”으로 제시한다(Pettit, 1997: 301).

비지배자유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따를 때, 비지배자유는 강도가 강하고 범위가 넓을수록 극대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비지배자유개념의 강도/범위의 구분은 비지배자유에 대한 페릿의 사유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된다. 비지배자유의 강도/범위의 구분에 상응하여,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해 그가 제안하는 정책 역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지배로부터 동등하게 보호”(같은 책: 275) 받음으로써 “동등한 강도를 지닌 비지배자유”(같은 책: 117)를 향유하는 “구조적 평등”(같은 책: 119)의 추구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갖는 권력이 평등하게 되어 ‘지배’가 최대한 억제되기 때문이다.¹⁵⁾

두 번째는 비지배자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 ‘물질적 수단’을 증가시키고, “장애, 빈곤, 무지” 같은 “비지배자유의 조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영향은 줄임으로써” “인민들이 지배받지 않는 선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와 용이성을 증가”(같은 책: 289)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맥락에서 페릿은 자신의 비지배자유를 “효과적인 비지배자유”(effective freedom as non-domination)로 특징짓는다. 또한 이런 정책을 동반하지 않는 공화주의의 전통적인 비지배자유를 “형식적 비지배자유”(formal freedom as non-domination)로 부르면서 자신의 ‘비지배자유’와 차별화한다(같은 글).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사유재산을 옹호한다. 사유재산의 운동은 국가의 비지배간섭을 요청하나 물건의 판매/구매 등을 통해 지배받지 않는 선택범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같은 책: 135).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정책이 “물질적 평등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물질적 평등주의”를 비지배자유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본질적”이

15) “내가 구조적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이 사회에서 향유하는 비지배자유의 강도는 당사자의 권력들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진 권력들의 함수이기 때문이다.”(Pettit, 1997: 113)

라고 보지 않는다(같은 책: 119). 물질적 불평등의 용인이 예를 들어 노동동기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비지배자유를 위한 물질적 수단과 비지배자유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118 참조).

페тит에게 이러한 비지배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자유의 이상”(Pettit, 2012: 6)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들이 “사적이고 분산화된 수단들을 통해 만족스럽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Pettit, 1997: 92). 오히려 “국가”가 “효과적으로 추구”(같은 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지배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이상”(같은 책: 27)이다. 나아가 “국가가 증진시켜야 할 목적인 가치”(같은 책: 97)다.¹⁶⁾ 그가 ‘비지배자유’라는 자신의 핵심이념에서 어떤 형태의 국가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살펴보자.

3) 페тит은 공화주의의 전통적 견해에서처럼 국가는 오직 “공동 관심사”나 “공동이익”(Martí/Pettit, 2010: 61), 곧 “공동선”에 대해서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같은 책: 62). 나아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데 까지 추구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고 본다(Pettit, 1997: 287). 먼저 공동선에 대한 그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페тит은 공동선을 경제학적인 “비배제성”을 갖는 ‘좋은’으로 정의한다. 일부를 위한 증진 없이 개인을 위한 증진이 있을 수 없는 경우는 “부분적 공동선”으로, 모두를 위한 증진 없이 개인의 증진이

16) 페тит은 비지배자유를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는 이 입장이 근대 다원주의 국가정책이 취해야 할 ‘중립성’에 대한 요청, 곧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과 가치만을 좋은 것으로 여겨 이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상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코스가드(Korsgaard)의 주장에 연계하여 그는, 자신의 공화주의 국가는 시민의 자유에 의해 대표되는 보편적인 좋은만을 인정하는 국가를 추구함으로써 예의 ‘중립성’을 만족시킨다고 주장한다(Pettit, 1997: 96). ‘비지배자유’는 “서로 다른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치적 이상”(같은 책: 97)이라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경우는 “완전한 공동선”으로 정의한다(같은 책: 121). 특히 공동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이익”에 대해 그는, 연대와 협력에서 창출되어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재화(같은 책: 287)로 규정한다. 이러한 재화에서 유래하는 이익의 분배로부터는 그 어떤 구성원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는 공동선에 대한 그의 정의를 충족한다.¹⁷⁾

그런데 페тит은 비지배자유 또한 비배제성을 갖는 공동선으로 본다. 모든 구성원들의 비지배자유를 성취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위한 완전한 비지배자유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같은 책: 259). 나아가 그는 비지배자유를 국가의 목표와 형태를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같은 책: 129) 국가이론을 도출하는 기초로 작동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공동선으로 본다. 비지배자유가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 모두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그가 비지배자유에 부여하는 이 특별한 의의와 기능은 설득력이 있다. 그가 이 자유개념에서 자신의 국가이론을 어떻게, 또한 어떤 형태로 도출하는지 살펴보자.

언급하였듯이 페тит은 국가의 목적을 무엇보다 비지배자유 증진으로 본다(같은 책: 80). 이 때 그는 지배를 사적 지배(*dominium*)와 정치적 또는 공적 지배(*imperium*)라는 두 형태로 분류한다. 이 양 형태의 지배로부터의 인민보호라는 국가의 목적에서 그는 “국가형태”와 “정책 의제”를 도출한다(Marti/Pettit, 2010: 52). 즉 인민을 사적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의제를, 공적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 (같은 책: 49)라는 “국가형태”(Pettit,

17) 어떤 구성원을 분배에서 배제한다면 그는 더 이상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연대와 협력에서 창출된 부가 연대하고 협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배될 것을 강제할 것이다.

1997: 171)를 도출한다. 전자부터 살펴보자.

2010년에 출간되었으나 2004년경에 집필된 마르띠와의 공저, 『공적 삶에서의 정치철학』(A Political Philosophy in Public Life)에서 페티이 제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정책은, 1997년의 『공화주의』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비지배자유의 증진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정책의 하나인 “개인적 자립”(personal independence)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개인적 자립정책이란 “구걸”이나 “자선”(같은 책: 158)에 의지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수단들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글). 따라서 이 정책은 사실상 개인의 경제적 자립정책이다. 그가 이 정책의 근거로 비지배자유의 “강도”강화와 “범위”증진을 제시(같은 책: 160) 하는 것이 보여주듯, 이 정책은 ‘비지배자유’에 대한 그의 심화된 견해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 때 그는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와 수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고찰만이 아니라 경험적 고찰도 중요하며 공화주의적 이상이 직접 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유보한다(같은 책: 160 이하). 동시에 현금형태와 보편적 지급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서(같은 글), 피지원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지배를 막기 위해 지원이 “권리의 형태”로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같은 책: 162). 이런 측면에서 그는 사실상 인권의 가장 진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의 보장을 주장한다.

『공적 삶에서의 정치철학』에서 이 개인적 자립정책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여기서 페티은 “가장 가난한 시민”도 “선택의 기초영역”(basic domain)¹⁸⁾에서 “사적 권력”(Martí/Pettit, 2010: 53)으로부터 보호받는 국가를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본다. 또한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인 국가의 네 가지 기본과제로 비지배의

18) 페티의 “선택의 기초영역”이란 정상적인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을 의미한다(Martí/Pettit, 2010: 35).

인프라구조 건립, 약자에 대한 권력부여, 일반적 차원에서 인민에게 보호를 제공할 것 및 권력기관 규제를 제시한다. 특히 약자에 대한 권력부여와 관련하여 그는, 약자가 적절한 “권리”와 “권력”만이 아니라 ‘지배’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선택지” 또한 가져야 함을 부각한다(같은 책: 55이하). 또한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약자가 직장으로 그만두었을 때 지급되는 “합리적인 국가소득”(reasonable state income)을 제안한다.¹⁹⁾ 이 선택지 또는 합리적인 국가소득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도 유보적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가소득을 “자산심사 사회보장제도” 같은 조건부 형태에서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²⁰⁾ 다음 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후 그는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공적 지배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국가형태부터 살펴보자.

페티트의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따를 때,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관할하는 국가 및 정부의 존재는 “자연적 필연성”(Martí/Pettit, 같은 책: 59)이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한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간섭이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에 따르는 ‘비자의적 간섭’이 아니라 자의적 간섭, 곧 지배, 이 경우 공적 지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형태 또는 조직방식에 대한 그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곧 국가간섭의 자의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Pettit, 1997: 171).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형태를 규정하

19) 이러한 국가소득이 있을 때 노동자는 직장 내 지배로부터 더 잘 보호될 것이라는 것이다(Martí/Pettit, 2010: 56).

20) 기본소득을 고려하는 이 부분에서 그는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될 라벤토스(Raventós) 및 그의 2007년 저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Martí/Pettit, 2010: 56).

는 다음 두 계기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입헌정치(constitutionalism), 곧 헌법에 의거한 법치다. 이 경우 공직자의 인격적 요소 같은 우연의 영향이 최소화되어 국가에 의한 자의적 간섭 또한 최소화되기 때문이다(같은 책: 171이하). 페티트는 성공적인 입헌정치를 위해 법치 외에 “권력분산”(같은 책: 177)과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반다수결주의”(같은 책: 180)를 요청한다. 반다수결주의와 관련하여 그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들의 도입과 함께,²¹⁾ 좋은 법의 판명기준으로 단순한 다수지지만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필요함을 부각한다. 또한 “비지배자유”의 “증진”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다(같은 책: 181). 이는 그에게서 좋은 법체제의 판명기준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공화주의 이념, 따라서 비지배자유를 비롯한 공동선 및 그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 또는 “이성”(같은 책: 201)임을 시사한다.²²⁾

두 번째는 민주주의다. 페티트가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여 그 극대화를 꾀하는 비지배자유가 개인들 위에서 개인들을 지배하는 공적 권력을 비롯한 모든 ‘지배’를 부정함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는 사실 그의 공화주의에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때 그는 직접민주주

21) 페티트는 비지배자유와 관점에서 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이 다수의 지지만으로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개정조건으로 유권자의 2/3 이상의 지지나 다르게 구성된 두 의회의 통과 같은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에 다수주의의 위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페티트는 양원제, 법에 대한 헌법적 제한, 권리장전의 도입 등을 제시한다(Pettit, 1997: 181).

22) 다른 공화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페티트 역시, 공화주의국가와 법체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족 외부의 연합”으로 “정치의 실제적인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의 “규범”(Pettit, 1997: 240)과 시민들의 “시민적 교양”(civility)(같은 책: 245)과 법체제가 상호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한다고 본다(같은 책: 241).

의에 대해서는, “인민의 민주적 참여를 최고선의 하나”(같은 책: 7)로 보아 “법의 궁극근원을 여론과 입법의지에 둠”(같은 책: 181)으로써 자의성의 한 형태로서의 다수전제²³⁾를 초래할 수 있는(같은 책: 8), “대중추수주의”(populism)(같은 책: 7)로 비판한다.²⁴⁾ 개인을 자의적인 “모두의 의지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81).

따라서 그는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선거로 공직자들을 선출하기만 할 뿐 견제하지는 않는 형태의 대의민주주의, 곧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같은 책: 294)에 대해서는 “다수독재”나 “선거전제주의”(elective despotism), 곧 엘리트그룹이나 이런저런 소집단의 전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같은 책: 293이하). 선거의 특성인 다수결주의로 인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동이익이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선출된 자들의 자의적 지배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같은 책: 294).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본질적일 수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가 비지배자유에 향유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전통은 민주적 참여 자체에 근본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같은 책: 7).

따라서 그는 인민이 억제하거나 선별하는 장치를 통해 정부를 “사후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같은 책: 295) 견제하는

23) 페티트는 투표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자에 대한 지배, 소수에 대한 지배, 개인적 감정 등에 따른 투표 역시 다수전제의 사례로 본다(Pettit, 1999: 176이하).

24) 페티트는 이 대중추수주의를 공스땅의 고대인의 자유이자 다의적인 별린의 적극적 자유의 한 의미로 본다(Pettit, 1997: 10). 또한 공화주의 전통에서의 대중추수주의의 근원으로 루소를 거론하며(같은 책: 30),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역시 대중추수주의적인 공화주의로 비판한다(같은 책: 8이하).

“견제 민주주의”(contestatory democracy)를 통해, 선거 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같은 책: 294이하). 곧 “민주주의의 이차원적 이상”(같은 책: 296)을 기획한다. 이에 따르면 공적 결정의 비자의성은 “동의”(consent) 보다는 “견제력”(contestability)을 필요로 한다(같은 책: 184). 다수의 ‘동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다수전제’가 될 가능성 및 저항부재를 ‘암묵적 동의’로 해석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같은 책: 184), 공적 결정의 비자의성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이러한 비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결정이 시민들의 이익이나 관념과 갈등할 때 시민들이 공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제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185). 이런 맥락에서 그는 파스퀴노(Pasquino)를 따라, 공화주의에서 인민주권을 “선거적 권위”가 아니라 “저항의 권리”에서 찾는다(같은 책: 202). 또한 시민들의 견제력 강화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포용력(같은 책: 143)을 함양하기 위해 그는 견제를 절차적 측면, 심의적 측면 및 항소적 측면이라는 세 측면에서 제도화하고자 한다(같은 책: 295).²⁶⁾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상을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견제민주주의로 제시하면서 페티은, 비지배자유라는 철학적 이상과 입헌정치적 요소와 함께 민주주의를 사실상 자신의 신공화주의 사상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제시한다(곽준혁, 2010: 49). 나아가 그는 공화주의의 목표, 곧 비지배자유와 입헌정치에 비해 민주주의에 “우선성”을 둔다. 자신이 전개한 비지배자유

25) 페티은 다수전제의 가능성과 불평등한 계약의 체결가능성으로 인해, ‘동의’가 공적 결정만이 아닌 사적 결정에서도 자의성과 지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Pettit, 1997: 61이하).

26) 페티은 곽준혁과의 대담에서 시민사회운동 또한 ‘견제’ 기능을 수행함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견제 민주주의가 주어진 헌정적 틀 내에 갇히지 않음을 부각한다(곽준혁, 2010: 62 이하).

와 입헌정치에 대한 논의는 “잠정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 우선적이 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200이하). 그 결과 국가의 목적 및 입헌정치에 대한 자신의 논의까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글). 물론 이 때의 민주주의는 그가 비판한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견제민주주의다. 그에 의하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자신의 신공화주의의 목적, 곧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필수조건”(곽준혁, 2010: 49)이 아니다. “정부가 입헌정치적 제약에 통제되고 민주적 견제에 열려 있어 인민이 원하는 대로 작동한다면, 인민은 그들 스스로가 통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같은 책: 50 이하)다는 것이다.

4) 지금까지 페티트의 신공화주의를 그 논리적 구조와 핵심이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가 ‘비지배자유’를 비롯한 공동선, 법치 및 민주주의라는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을, 자신의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정교하게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의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고찰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그의 논의의 의의와 한계 또는 불충분성 등에 대해 살펴보자.

그의 논의의 첫 번째 의의는 그가 비지배자유개념의 심화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의 물질·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를 통해 비지배자유에 대한 사유를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구조적 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고찰함으로써, 비지배자유 의 물질·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가 “권력을 발생시키는 자원의 불평등”(Pettit, 1997: 70) 문제, 곧 지배와 결합되어 구조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논의될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적으로 주로 ‘정

치와 관련되어 전개되어 왔던 공화주의²⁷⁾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사회경제’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그렇지만 그가 자원평등화를 통한 비지배 극대화를 “이상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여겨 헌법적 규정전략을 채택한다는 사실(같은 책: 67이하)이 시사하듯, ‘사회경제’와 관련되는 이러한 단서들은 그에게서 ‘사회경제’의 연구와 개혁을 위한 공화주의적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비지배자유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그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그의 논의의 또 다른 불충분성은, 이 한계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인다.

유사한 의의와 한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페팅의 논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견제민주주의를 통해 선거민주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제를 비롯한 자의적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안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는 첫째, 직접민주주의와 법치의 양립불가능성을 부당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직접민주주의가 전체론 또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조직된다면, 직접민주주의 역시 사회적 좋음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 및 이를 구체화한 법체제에 기초하여 조직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개인의 좋음과 이익을 극대화하므로, 합리적인 개인들이라면 이러한 정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7) 김경희와 김동규에 따르면 “공화주의 정신의 중심에는 정치성이 놓여 있다”(김경희/김동규, 2006: 12).

28) 이런 측면에서 페팅의 신공화주의는 네그리/하트가 비판하는 “소유공화주의”, 곧 부르주아혁명 이후 지배적이 된 공화주의의 한 형태로, “소유의 지배와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에 기반한, 따라서 재산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는 공화주의”(Negri/Hardt, 2009: 38)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둘째, 자의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영구적 가능성” (같은 책: 63)을 페티이 견제력에서 찾고 있지만, 견제를 위한 기제들 역시 유명무실하고 형식화되어 선거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구 선진민주주의국가들과 우리나라에 그가 제안하는 견제기제들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²⁹⁾은, 이를 어느 정도 입증한다. ‘견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인민의 광범한 관심과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관심과 참여를 직접 지향한다. 따라서 견제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접민주주의가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정의, 곧 ‘인민의 자기통치’는 사실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함을 보여준다. 물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주의 형태들 중에서 이 정의를 완전히 충족시켰던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사이에는 단지 이 이상에 근접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실 페티 스스로도, 대의민주주의의 고전적 대변자인 밀(J. S. Mill)처럼, 민주주의의 이상이 직접민주주의임을 인정한다.³⁰⁾ 모든 성원의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고 심의민주주의의 일반적 경우와 어긋나지 않을 경우, 간접적인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적 참여가 선호된다는 것이다(Pettit, 2001: 270). 그렇지만 그는

29) 그 예로 양원제, 시위권 등을 들 수 있다(Pettit, 1997: 193).

30) 나아가 밀은 직접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도 시사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부란 곧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어떤 참여라도, 하다 못해 공공 기능에 대한 극히 미미한 참여라도 유용하다. 어떤 곳이든, 사회의 일반적 진보 수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J. S. Mill, 1861: 74).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비록 당장 실현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끊임없이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인구와 복잡성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에도 근거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터넷 등을 비롯한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제들도 창출해 낸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대안모색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근접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이후에 페럿이 제안하게 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될 때, 인민의 광범한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을 고찰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3.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

1)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논의에 연계하여 페럿을 비롯한 신공화주의 이론가들의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³¹⁾ 이어서 대안을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31) 카사사스와 와이스펠레레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주장한 최초의 근대적인 공화주의자는 18세기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다 (Casassas/Wispelaere, 2012: 173). 21세기 이후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주로 페럿 및 그의 영향을 받은 신공화주의자들이 기본소득론을 전개한다. 페인에 대해서는 『녹색평론』 147호 손 모너헌(Sean Monohan)의 글을 보라.

페딧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2007년 경 부터다. 지지의 근거는 비지배자유의 보장이다. 즉 그는 “지배에 대항할 권력”의 물질·경제적 기초로,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 ‘무조건적’,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충분한 소득”, 곧 기본소득을 제안한다(Pettit, 2007: 28). 비지배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위해 고용주만이 아니라 복지행정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나 관료 등에게도 구걸하지 않고서도 ‘지배자’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글: 28이하). 따라서 선별과정을 동반하는 조건부 복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인 현물/현금소득, 곧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기본소득이 또한 ‘보편적’으로 주어져야만 기본소득을 폐기하자는 압박 등을 덜 받게 되어, 지배에 대한 더 굳건한 방어물이 된다는 것이다(같은 글: 29). 나아가 그는 비지배자유라는 공동선을 위한 합리적인 고려에서 요청되는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나 “의회 투표”같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쳐 채택되고 실시된다면, 이는 “지배”가 아니라 “통제된 간섭”이라고 본다(같은 글).

기본소득에 대한 페딧의 이러한 지지는, 자신이 이전에 제기했던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러 가능한 정책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최선의 정책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 발전이다. 그렇지만 2007년의 이 글은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 외에 기본소득의 재원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경제’의 연구와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결여라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그의 한계는, 이제 그의 기본소득론의 한계가 된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한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후에 행해진 객준혁과의 대담은 다소 달라진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페딧은 ‘비지배자유’에 따른 시장활동에 대한 적

절한 규제와 적절한 영역에서의 공유의 도입을 동시에 주장한다(곽준혁, 2010: 57이하). 또한 ‘시민경제’(civic economy)를 주장하는 공화주의자 대거(Richard Dagger)의 주장에 “넓은 의미에서 공감”하며, 자신과 대거는 “세부적인 것들에서 차이가 있을 뿐”(같은 책: 58)이라고 주장한다. 대거의 시민경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거는 샌들(Sandel)의 공화주의적 정치경제, 곧 시민들의 자기 통치에 기여하는 정치경제학을 지지한다(Dagger, 2006: 301).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경영자를 견제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자의성을 제약하는 “작업장 공화주의”(같은 책: 303), 상속세, 누진적 소비세, 빈곤극복정책 등을 제시한다(같은 책: 303-305).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가 롤스(Rawls)를 따라 미드(James Meade)의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Meade, 1964: 41), 곧 “모든 시민의 자산을 거의 평등하게 하”(권정임, 2015: 23)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대거는 이 정책이 개인의 자기보호수단으로서 ‘사적 소유’에 가치를 두면서도 ‘평등’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에 충실하다고 본다(Dagger, 같은 책: 297이하).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평등성을 확보하고 자기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빈곤극복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정책이나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기본자본급여(basic-capital grant) 정책을 그가 제안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는 무조건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구직 노력 같은 “시민경제”에 대한 “헌신”이라는 조건부 형태로 제안한다(같은 책: 309).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거에게서 ‘사회경제’ 개혁프로그램의 한 중심축은, 롤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개혁에 대한 미드의 기획이다. 그런데 미드는 재산소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총자본의 대략 50%와 자연자원을 공유화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공유경제(common economy)³²를 주장한다. 또한 이 공유경제로

부터의 수익을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의 하나로 설정한다.³³⁾ 대거와 롤스는 미드의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공통되게 침묵한다. 반면 페팅은 적절한 영역에서의 ‘공유’를 주장한다. 어쩌면 이는 그가 신공화주의적 ‘사회경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실, 대거의 이론보다 미드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미드처럼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점 역시 그렇다.³⁴⁾ 사실 대거의 조건부 기본소득론은 모순적이다. 안효상이 적절하게 지적하듯, 이를 통해 그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무조건성”과 “그 물질적 조건의 조건성”(안효상, 2014: 198)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볼 때, 페팅은 객준혁과의 대답에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기본관점으로 재산소유민주주의와 공유경제의 결합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 때의 공유개념이 무엇이고, 공유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공동선과는 어떤 관계인지, 기본소득과 자신의 경제관이 어떤 관계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다.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다른 신공화주의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2007년에 발간된 『기본소득.

32) 공유경제는 영어로 흔히 ‘common economy’ 또는 ‘sharing economy’로 표현된다. 전자가 생산수단의 주요한 부분이 공유인 경제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대체로 Uber Taxi나 AirBnB처럼 자가용이나 자기소유 집을 나누어 쓰는 소유 나눔(ownership sharing)을 의미한다(강남훈/권정임, 2016: 57). 드물게 ‘sharing economy’로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지만, ‘sharing economy’를 소유나눔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의 영어표현으로 ‘common economy’를 채택하고자 한다. 미드의 공유화의 핵심은 소유나눔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공유화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공유경제(common economy)를 주장한다.

33) 미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 2015 참조.

34) 미드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이자 평생회원으로, 현대 기본소득론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다.

자유의 물질적 조건』(*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 of Freedom*)을 비롯한 라벤토스의 글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³⁵⁾ 기본소득론을 지지하는 2007년의 글에서 페티트는 라벤토스의 이 저작에 대해, 자신이 기본소득지지 입장으로 전향한 2007년 글을 집필한 후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마음이 맞는 공화주의적 사례”로 평가한다(Pettit, 2007: 30).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발전과 관련하여 라벤토스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정치철학적으로 공헌한다.

첫 번째는 ‘자유’의 경제적 기초와 관련된다. 라벤토스 역시 공화주의적 자유를 ‘비지배자유’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페티트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비지배자유’와 그 경제적·물질적 기초 간의 연관성을 페티트보다 근본적으로 개념화한다. 나아가 이 작업을 공화주의 사유전통의 재구성이라는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사상사적으로도 기여한다.

라벤토스에 따르면 공화주의 사유전통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평민적-민주적 견해”(plebeian-democratic version)(Raventós, 2007: 48)다. 공화주의적 자유, 곧 비지배자유를 보편화하고자 열망하여 다수 빈민들 역시 시민과 정부구성성원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같은 글). 페리클레스, 프로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근대의 로베스피에르 등을 그 대표자로 본다.

두 번째는 “반민주적 또는 과두제적 견해”(anti-democratic or oligarchic version)(같은 글)다. 부유한 재산소유자들의 자유만을 인정한다. 이 견해에 따를 때 공동체 성원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누어진다(같은 책: 72). 부자들은 능동적 시민으로 “권력”을 “독점”한다. 빈민들은 수동적 시민으로 “시민적·정치적

35) 라벤토스는 현재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 경제학과 교수다.

삶”으로부터 “배제”된다(같은 책: 48).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이 대변한다.

그런데 라벤토스에 따르면 이 두 전통은 사실상 자유를 같은 방식으로 사유한다(같은 책: 61). 즉 ‘자유’와 ‘재산’의 연계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Domènech/Raventós, 2007: 1).³⁶⁾ 이에 연계하여 라벤토스는 재산 및 거기서 유래하는 물질적·경제적 독립을 자유의 기초로 명시한다(Raventós, 2007: 68 이하). 또한 자유에 대한 평민적·민주적 견해의 관점에서 자유 및 자유의 기초, 곧 경제적 독립의 보편화를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자유개념은 ‘경제적 독립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비지배자유’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자유개념은 사실 페팅의 ‘비지배자유’에,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의 “생존권”(Laventós, 2007: 61) 또는 “존재권”(Domènech/Laventós, 2007: 4)³⁷⁾을 통합한 것이다. 나아가 2015년의 글에서 그는 이 생존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모두의 가장 기본적 인권, 즉 물질적 생존이라는 인권”(Raventós/Wark, 2015: 8)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라벤토스는 ‘자유’와 ‘경제’와의 연관이 본질적임을 페팅보

36) 이와 관련하여 라벤토스는 ‘지배’, 곧 *domination*의 어원인 고대라틴어 *dominium*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dominium*은 노예를 포함한 재산 및 이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능력을 의미한다(Domènech/Raventós, 2007: 3).

37)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혁명기 프랑스의 정체(*polity*)를 부자와 빈민의 분할로 특징지었다(Raventós, 2007: 57). 또한 자유파괴를 비롯한 모든 악의 근원을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보았다(같은 책: 59). 이러한 현실 진단 아래 그는 사회의 기본적인 목적을 양도불가능한 인권의 유지로, 또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존권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모든 성원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의 첫 번째 법으로 도출하였다. 그에 따를 때 재산은 오직 이 법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제도화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같은 책: 60이하).

다 근본적으로 개념화하여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공화주의 전체기획이 ‘경제’와 본질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 역시 페뮈르보다 근본적으로 보여준다.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발전과 관련된 라벤토스의 두 번째 정치철학적 공헌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자유 간의 본질적 연관”(Domènech/Raventós: 3)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아직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전인 『공화주의』에서의 페뮈르의 자유 개념, 곧 “지배와 타인에 의한 자의적 간섭의 부재”(같은 글)에 대한 비판에 연계되어 제기된다. 페뮈르의 자유개념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공화주의는 “자의적 간섭”의 “기본원천”을 “물질적 독립의 부재”로 여겨왔다는 것이다(같은 글).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가 발전시킨 ‘평민적·민주적 공화주의’에서 귀결된다고 보인다. 즉 공동체 성원 모두가 경제적 독립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것을,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 곧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의 전제로 보는 것이다. 결국 라벤토스는 경제적 기초와 통합된 생존권으로서의 자신의 자유개념에 기초하여, 공화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간의 본질적 연관을 보여준다. 이는 주권자의 자격요건으로 자유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간의 관련성을 페뮈르보다 구체적·심층적으로 보여준다.

라벤토스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근거 역시 페뮈르처럼 ‘자유’다. 그런데 그의 ‘자유’가 그 경제적 기초 및 ‘생존권’과 통합되어 있는 만큼, 그에게서 ‘자유’와 ‘기본소득’ 간의 연관은 페뮈르에게서 보다 본질적이다. 즉 기본소득은 그에게서 그의 자유개념의 구성요소다. 라벤토스는 자유의 기초, 곧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재산의 보편화”(Raventós, 2007: 69)를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나 재산의 공유”(common out)에 대해 현재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의 보편화를 실제로는 “물질적 존재(existence)의 보장”

으로 제시한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바로 이 물질적 존재의 보장으로로서의 “재산의 보편화를 위한 제도적 기제”다(같은 글). 이 때 그는 누진세를 통해 사실상 상위 20%의 부자에게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Raventós/Wark, 2016: 44).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재원조달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시장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빈곤퇴치 방책 이상의 것”(같은 책: 45)이 된다. 즉 그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자 “고도로 정치적인 방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설계하여,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매우 다른 자본주의”를 견인하고자 한다(같은 글).

이러한 라벤토스의 기본소득론은 기본소득을 생존권이라는 경제적 권리이자 인권으로 명시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재원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페딧의 기본소득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재원정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페딧이 시사했던 ‘공유’는 현재 그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원에서의 정책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정책제안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사회경제’의 공화주의적 변혁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그 일부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예를 들자면 그가 이러한 누진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변화된 시장상황의 항구적인 재생산을 의도하는지, 아니면 이를 통해 다른 경제구조를 촉발하고자 하는지, 후자라면 어떤 경제구조인지 등이 불분명해 진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재원이 언제나 상위 20%에 부가되는 누진세제도로 설정되는지, 이는 과연 언제나 정의롭고 합리적인지 등도 불분명해 진다. ‘사회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부재와 함께, 자유의 경제적 기초에 연계하여 그가 부각한 자유와 민주주의 간의 본질적 연관 역시 사회경제전체와 관련하여 체계적

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카사사스와 와이스펠레레 역시 지금까지 논한 페딧과 라벤토스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페딧과 라벤토스의 영향 아래 그들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다른 개인들이나 그룹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자유”(Casassas/Wispelaere, 2012: 173)로 정식화한다. 또한 이 자유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함께 미드 및 롤스에 연계된 재산소유민주주의(같은 책: 173), 사적 부에 대한 경제적 상한선 설정(같은 책: 180) 등을 제안한다. 그렇지만 이들에게서도 기본소득론은 ‘사회경제’에 대한 공화주의적인 장기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견해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화주의에서 사회는 “집단적 자기결정”에 의해 통치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연관을 페딧보다 근본적으로 제시한다(같은 책: 182).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실상 페딧의 견제민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같은 책: 184 참조).

2) 지금까지 살펴본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성과와 한계를 총괄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해 보자.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은 무엇보다, ‘비지배자유’라는 전통적인 공화주의 자유개념의 발전이라는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신공화주의는 공화주의의 전통적인 자유개념인 ‘비지배자유’를 심화하면서, ‘구조적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비지배자유를 물질 기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한편에서는 비지배자유를 조건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립’(페딧) 또는 ‘생존권’(라벤토스)을 위한 기본소득정책의 제안으로 전개된다. 다른 한편 비지배자유를 위한 공화주의의 기획이 전통적인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준다. 즉 페딧은 공화주의적인 ‘시민경제’가 ‘비지배

자유이념에 따라 규제된 시장 + 재산소유민주주의 + 적절한 영역에서의 공유경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시사한다. 라벤토스는 재산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정책과 함께 그 재원조달을 위해 누진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시장상황 및 자본주의와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를 견인하고자 한다. 카사사스와 와이스펠레레는 공화주의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제와 함께 재산소유민주주의 및 사적 부에 대한 경제적 상한선의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신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자유의 증진을 위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페딧, 카사사스 및 와이스펠레레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견제민주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면,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되는 생존권과 통합된 비지배자유개념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자유 및 경제 간의 본질적 연관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 동시에 기본소득의 재원, 현존 사회경제의 발전방향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의 신공화주의적인 변혁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냄을 부각하였다. 또한 이들의 민주주의 이론 역시 고유한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페딧과 카사사스/와이스펠레레가 견제민주주의 역시 극복하기 어려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라벤토스는 생존권으로서의 ‘비지배자유’에 기초하여 자유와 경제와 민주주의 간의 본질적 연관을 포착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관을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경제’까지 아우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그에게 ‘사회경제’의 변혁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창출해 보자.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페티이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라벤토스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재산의 보편화 방식으로 시사한 ‘공유’문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공유’ 또는 ‘공유하는 부’(이하 공유부), 곧 자연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성원 모두가 평등한 향유권리를 갖는 대상이, ‘공동선’에 대한 신공화주의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선’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토지나 재산의 공유에 대해 현재 누구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라벤토스의 견해와는 달리, 공유부와 관련되는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네그리/하트, 인터넷을 매개로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운동의 이론가와 활동가³⁸⁾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급속히 확산·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의 목표는 신공화주의 및 그 기본소득론에 대한 충분한 대안제시가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의 제시다. 전자를 위해서는 더 충분한 연구와 별도의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글이 ‘공유’를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의 제시로 만족하고자 한다.

살펴보았듯이 페티은 공동선을 경제학적인 비배제성을 갖는 ‘좋은’으로 정의한다. 이는 비배제성을 갖는 자원, 곧 “공유의 자연재 및 문화, 언어, 무상교육, 공유 기업 등” 그 사용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자원 내지 재화”로서의 “공유재나 공유 자원”(the Commons)(곽노완, 2016: 195), 곧 공유부³⁹⁾가 공동선에 대한 그의 정의를 충족함을 의미한다. 따라

38) 이에 대해서는 곽노완, 2016: 171 이하를 참조하라.

39) 경제학적으로 비배제성을 갖는 자원은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과 공공재로 대별된다. 공유자원이란 맑은 공기나 물처럼 그 어떤 개

서 공유부가 ‘경제적 공동선’으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회경제’변혁에 대한 신공화주의 프로그램 역시 공유부 및 이와 관련되는 공유경제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페탕이 공화주의 전통에 충실하게 공동이익 또한 공동선의 일부로 본다는 사실은 이러한 확장을 유리하게 한다. 그렇지만 연대와 협력에서 창출되어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라는 공동이익에 대한 그의 정의는, 자연을 공동이익 곧 경제적 공동선에서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의 공동이익에 자연적 부까지 포함시킬 때, 그의 공동이익은 경제적 공동선, 곧 공유부와 일치한다.⁴⁰⁾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신공화주의 프로그램이 ‘경제적 공동선’, 곧 ‘공유부’ 및 이와 관련되는 ‘공유경제’의 창출과 관리 및 분배문제로 확장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던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한계 극복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고찰하였듯이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는,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의 제시 및 보다 근본적인 민주화를 포함하는 ‘사회경제’

인도 그 자원의 사용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배제성’과 그 자원을 둘러싼 개인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의미하는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다. 공공재란 전승된 지식처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이다. ‘the Commons’에 해당하는 광노완의 ‘공유재’ 또는 ‘공유 자원’ 범주는 이 두 유형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그로 인해 ‘common pool resource’로서의 공유자원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광노완의 ‘공유재’ 범주를 ‘공유부’로 대체하였다.

- 40) 공유부와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가들 대부분이 자연적 부를 공유부로 포괄한다. 예를 들어 네그리/하트는 공유부, 곧 “공통적인”(Negri/Hardt, 2009: 16) 부를 자연을 포괄하는 생태적 자원과 지식 같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월자스퍼(Walljasper)는 공유부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과 인류의 공동창작물로 이루어지며 모두에게 속하는 부”(광노완, 2016: 172에서 재인용)로 정의한다.

의 신공화주의적 변혁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다. 신공화주의 프로그램이 ‘공유부’ 및 ‘공유경제’로 확장해 갈 때, 이러한 한계들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고찰해 보자.

정의하였듯이 공유부란 그 사용과 향유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한 $1/n$ 의 권리를 갖는 부, 나아가 그 “처분”과 관리에 있어서도 모두가 $1/n$ 의 권리를 갖는 부다(권정임, 2015: 39). 이는 한편에서는 특정 개인이 특정 공유부를 통해 이득을 산출하는 경우, 그 일부,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 개인의 노동의 직접적인 성과가 아닌 부분을 자신으로 인해 그 공유부를 사용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으로 제공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는 공유부에서 유래하는 이득이 기본소득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재원임을 의미한다.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향유권과 처분권은 다른 한편, 공유부에 대한 처분과 관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첫째, 공유부의 생산/재생산과정을 포함하는 경제가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경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공유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모두의 통제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견제민주주의를 포함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정의와 이상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제들을 최대한 창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때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통해 인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개인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여유를 갖게 되어 각자 원하는 대로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공유경제와 정치체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제는 물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선, 따라서 모든 개인들의 개

인적 좋음 역시 극대화하는 사회적 합리성과 필연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치를 조건으로 창출된다. 나아가 그 운영 역시 법치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페팃이 우려하는 자의적 지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경제’의 신공화주의적 변혁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공유부의 생산과 재생산 및 그 분배와 관련되는, 민주주의적인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⁴¹⁾ 결론적으로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 나아가 신공화주의 기획전체는 공유부/공유경제와 직접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간의 체계적인 연관 아래 비판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⁴²⁾ 또는 이 전체연관의 중심을 공

41) 많은 논자들이 강조하듯, 공유부의 가치는 사적 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 콘스탄자(Constanza)의 계산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공유부의 총액은 사유재산 총액인 54조 달러를 넘어선다. 공유부의 경제에 대한 기여는 잘 관리되지 않아 쉽게 사유화된다(곽노완, 2016: 172 이하). 소비자운동가 랄프 네이더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공전파, 공공토지,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결과 같은 공유부의 가치가 사적 부의 가치를 능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상업화하거나 장악해 왔다고 한다(Bollier, 2014: 6).

42) 공화주의적 시민권을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장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공유경제를 통합하려는 시도로는 금민, 안효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들 수 있다(금민, 2014, 안효상, 2014). 특히 2014년의 금민의 논문은 기본소득의 세 이념인 ‘무조건성’과 ‘보편성’과 ‘개별성’에 함축된 정치철학적 함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화주의가 기획하는 사회경제변혁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금민, 같은 책: 50 이하). 이 논문에서 그는 인민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담지하는 공공체(res publica) 및 그 경제적 전개로서의 공유경제가, 이 공유경제에서 조달되며 ‘개별성’을 담지하는 기본소득을 통해, 네그리/하트적인 공동체(commonwealth), 곧 “공통적 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삶의 형태”(네그리/하트, 2009: 24의 역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들의 연합”(금민, 같은 책: 78) 및 그 경제적 전개로서의 협동조합 같은 연대경제와 통합됨을 부각한다. 달리 말해서 이는 공공체, 곧 전통적으로

유부/공유경제에 둔다는 의미에서 공유사회론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신공화주의 및 그 기본소득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 기본소득론 및 이와 연관된 사회·정치철학적 사유의 발전을 위해, 신공화주의 및 그 기본소득론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공화주의 사유가 암묵적으로 전제해 왔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을 페터이 ‘전체론적 개인주의’라는 ‘사회적 존재론’으로 명시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의존과 상호영향을 인정하는 이 사회적 존재론

사실상 ‘공적 영역’을 의미하면서 시민의 사적 경제활동 및 삶과는 분리되었던 공화국을,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그들 간의 연합을 실제로 지원함으로써 “공통체로 확장”하고 “변형”(같은 책: 78)하고자 하는 기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의도는 신공화주의의 비판적 변형을 위한 이 글의 제안과 부합한다. 그렇지만 그의 프로그램은 동시에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 그에 의하면 공유부에 기초하는 두 경제형태가 있다. 즉 “공공의 지배와 사회적 통제를 받는 기업”(같은 책: 66)으로 이루어지며 공공체의 경제적 전개인 “공유경제”와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대에 기초하며 공통체의 경제적 전개인 “연대경제”(같은 책: 50)가 그것이다. 이 두 형태 모두 궁극적으로 공유부에 기초하는데, 공유경제는 기본소득을 조달하고 연대경제는 이를 향유하여 활성화된다. 그렇지만 이 이원론적인 경제관, 특히 기본소득의 조달자와 수혜자로의 이원화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같은 공화주의의 전통적인 쟁점들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따를 때, 공동선이란 좋은 사회관계나 제도처럼 개인적 좋음의 조건이나 계기가 되어 이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차원의 좋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선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전제할 때, 페팅에게서 개인이 자율적·능동적으로 살아갈 자유는 이러한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을 따르는 법치를 위반하는 자의적 간섭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 곧 비지배자유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비지배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보장과 ‘공동선’의 극대화 및 ‘법치’라는 공화주의의 전통적 가치들이 통합되는 범주다. 나아가 ‘비지배자유’는 특정 지배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통합되는 가치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페팅이 비지배자유개념을 심화하여, 사람들이 지배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는 ‘구조적 평등’과 비지배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물질·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그에게서 국가의 주요정책과 형태에 대한 이론이라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는 이 이론을 비지배자유 극대화라는 국가의 목적에서 도출한다. 그에게 비지배자유가 공동선과 개인적 좋음 모두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자 그 자체 공동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적 지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페팅은 무엇보다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후 이는 기본소득론에 대한 그의 지지로 이어진다. 결국 그는 전통적으로 주로 ‘정치’와 관련되어 전개되어 왔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사회경제’로 확장한다. 다른 한편 공적 지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가형태로 그는 입헌정치와 민주주의를 부각한다. 나아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로서의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여, 이를 견제민주주의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에 대한 공화주의적 변혁과 관련되는 이러한 단서들은 그에게서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기획은 그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대안구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다른 신공화주의 학자들 역시, 그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페티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한계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벤토스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자유’는 페티의 ‘비지배자유’와 로베스피에르의 ‘생존권’을 통합한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을 자신의 자유개념의 구성요소로 수용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기본적 인권, 즉 물질적 생존이라는 인권’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자유’와 ‘경제’와의 연관이 본질적임을 페티보다 근본적으로 개념화하여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공화주의 전체기획이 ‘경제’와 본질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 역시 페티보다 근본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초와 통합된 생존권으로서의 자신의 자유개념에 기초하여, 공화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 간의 연관 또한 페티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발전시킨 평민적-민주적 공화주의 전통에 의할 때, 경제적 독립에 기초한 공동체 성원 모두의 자유가 모든 인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누진세제도를 통해 사실상 상위 20%의 부자에게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장과 자본주의를 견인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기본소득론은 페티의 그것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나 라벤토스는 자신이 기본소득제와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특징 등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 아래 체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기본소득론은 ‘사회경제’의 신공화주의적인 변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페티의 한계를 근본적으로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한 그의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과 합리성 역시 의문스러워진다. 나아가 그는 자유와 경제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연관에 대한 그의 포착을, ‘경제’를 망라하는 전체사회를 아우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를 보인다. 이 때 이는 ‘사회경제’의 변혁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그의 또 다른 한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신공화주의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페티와 라벤토스 모두 시사하는 ‘공유부’ 및 이와 관련된 ‘공유경제’를 주목하였다. 공유부는 ‘비배제성’이라는 공동선에 대한 페티의 정의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선’으로 신공화주의 이론에 통합될 수 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앞에서 고찰한 신공화주의의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첫째, 공유부에서 유래하는 이득 중에서 이를 생산한 개인의 노동의 직접적인 성과가 아닌 부분은 원칙적으로 모두의 몫이다. 이는 공유부에서 유래하는 이득이 기본소득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재원임을 의미한다.

둘째,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향유권과 처분권은 다른 한편, 공유부에 대한 처분과 관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경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이는, 공유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모두의 통제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민

주주의의 정의와 이상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제들을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증폭하고 경제적 자립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역량 또한 끌어올린다는 점은, 이러한 시도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자 배경이다. 이 때 다수전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자의적 지배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선, 따라서 모든 개인들의 개인적 좋음 역시 극대화하는 사회적 필연성과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치와의 결합에 의해 예방될 수 있다. 결국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 ‘공유부’와 ‘공유경제’로 확장될 때, 민주주의이론 역시 ‘사회경제’와의 보다 밀접한 연관 아래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의 신공화주의적 변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공유부의 생산과 재생산 및 그 분배와 관련되는 민주주의적인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 나아가 신공화주의 기획전체는 공유부/공유경제와 직접민주주의 및 기본소득 간의 체계적인 연관 아래 비판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또는 이 전체연관의 중심을 공유부/공유경제에 둔다는 의미에서, 공유사회론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남훈/권정임(2016): 「공유경제와 기본소득 - 제임스 미드(James Meade)의 아가싸토피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년 봄 학술대회 자료집』
- 곽노완(2015):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 『철학연구』(대한철학회 편) 135집.
- _____ (2016):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라움.
- 곽준혁(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한길사, 2011.
- 권정임(2008): 「생태문화의 창출과 비전」 『사회와 철학』 16호.
- _____ (2009): 「시스템 생태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 『사회와 철학』 18호.
- _____ (2015):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 미드의 아가토토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26권 2호.
- 금민(2014): 「기본소득 - ‘보편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사회화 형식」 『월간좌파』 2014년 5월(13호).
- 김경희(2009): 『공화주의』, 책세상, 2011.
- 김경희/김동규(2006): 「역자서문」 『공화주의』(Viroli, M. 저, 김경희/김동규 역, 인간사랑, 2006).
- 안효상(2014): 「21세기 좌파의 도전: 공화주의라는 전망」 『월간좌파』 2014년 1월.
- Bollier, D.(2014): *Think Like a Commoner*(『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역, 갈무리, 2015).
- Casassas, D./De Wispelaere, J.(2012): The Alaska Model, in: Widerquist, K/Howard, M. W.(ed.),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Palgrave Macmillan.
- Dagger, R.(2006): Neo-Republicanism and Civic Economy(「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 『시민과 세계』 10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편, 전

정현 역).

- Domènech, A./Raventós, D.(2007): Property and Republican Freedom: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Basic Income, in: *Basic Income Studies*, Vol.2, Issue2, December 2007.
- Lovett, F./Pettit, P.(2009): Neo-republicanism: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 i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2
- Martí, I. L./Pettit, Ph.(2010): *A Political Philosophy in Public Life. Civic Republicanism in Zapateró's Spai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ade, J. E. (1964):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in: Meade, J. E.,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3.
- Mill, J. S.(1861):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대의정부론』, 서병훈역, 아카넷, 2012).
- Negri, A./Hardt, M.(2009): *Commonwealth*(『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2014).
- Monohan, S.(2015): 「토마스 페인, 한 혁명가의 삶과 사상」 『녹색평론』 147호(김중철 역, 2016).
- Pettit, Ph.(1995): *The Common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2001):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Discursive Dilemma, in: *Philosophical Issues*, 11, *Soci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 _____ (2007): A Republican Right to Basic Income, in: Widerquist, K./Noguera, J. A. etc.(ed.),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Wiley Black Well, West Sussex, 2013.
- _____ (2012): 「한국어판 머리말」 『신공화주의. 비지배자유와 공화주의 정부』(곽준혁 역, 나남, 2012).
- Raventós, D.(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Pluto Press.
- Raventós, D./Wark, J.(2015): The Basic Income Debate: Political, Philosophical and Economic Issues(「기본소득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박선미 역), in: http://basicincomekorea.org/bien_papers_01/.

_____ (2016): Basic Income, Basic Issues(「기본소득, 기본적 쟁점」, 안효상 역), in: http://basicincomekorea.org/bien_papers_02_raventos_02/. Van Parijs(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A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Neo-republicanistic Theory of Basic Income
- A debate on a common economy and democracy-

Kwon, Jeong-Im

This paper aims at the critical study on the neo-republicanistic theory of basic income that Pettit and Raventós etc. have developed. The neo-republicanism, especially that of Pettit giv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elaborat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republicanistic issues as freedom as non-domination, common good,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rough his holistic individualism. Furthermore, the neo-republicanism actually extends the republicanistic project for the maximization of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to economic area and insist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or all. But these attempts could not develop to a long-term program of social transformation for maximiz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To overcome this, this paper proposes a critical transformation of the neo-republicanistic project in that the systematic relation between common wealth, common economy, direct democracy and basic income plays important role.

Subject Sphere: political philosophy, the theory of basic income

Key Word: neo-republicanism, neo-republicanistic theory of basic income, direct democracy, common economy, Pettit, Raventós